

심사규정

개정 2015. 04. 24

개정 2016. 11. 25

개정 2019. 06. 07

개정 2019. 09. 21

1. 학회지(CORROSION SCIENCE AND TECHNOLOGY)에 투고되는 연구논문과 총설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 2-1.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이 일차적으로 게재가능 논문과 게재불가 논문으로 판정하고, 게재 가능 논문에 한하여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가. 2015년 4월 24일부터 시행된 편집위원장의 사전심의 과정이 온라인 투고 및 심사시스템상에서 구현되지 않고 있으므로 2015년 12월에 게재되는 논문부터 온라인 투고 및 심사시스템에서 구현되도록 한다.
- 2-2. 심사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 2-3. 심사위원은 심사받을 논문과 관련된 전문가(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자격이 인정되는 자)로 선정한다.
3. 투고되는 논문은 심사위원 최소 2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4.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않으며, 심사내용은 저자에게만 통보되고 공표하지 않는다.
5.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최대 2주 이내에 심사의견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6.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이 시스템에 모두 등록됨이 확인되면 저자에게 통보한다.
7.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판정한다.
 - 7-1. 게재가(Accept as is)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없이 채택하며, 심사위원이 수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위원장이 이를 확인하여 채택한다.
 - 7-2. 수정후 게재(Accept with minor revision)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충하도록 요구한다.

수정후 게재(Accept with minor revision)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위원장이 이를 확인하여 채택한다.

- 7-3. 수정후 재심(Revision required)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 후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8. 심사위원은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심사평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8-1. 독창성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
 - 8-2. 원고내용에 저자가 알아낸 사실 또는 착상이 뚜렷하지 않거나, 기지의 사실이라고 인용된 문헌에 나타나 있는 방법 및 관점과 다른 각도에서 이를 종합분석 또는 고찰한 것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 8-3. 기타 본 회지에 게재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9.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9-1. 심사위원 심사결과가 게재가 또는 수정후 게재일 때, 편집위원장이 Accept 결정한다.
 - 9-2. 심사위원 중 1명 이상이 재심 또는 게재불가일 때, 편집위원장이 검토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9-3. 편집위원장의 검토에 따라 수정후 게재 또는 수정후 재심으로 결정되어 저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저자의 수정본이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처리할 수 있다.
10. 심사위원 위촉시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할 수 있다.